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4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주영 · 박균택 · 김태선  
홍기원 · 문정복 · 강득구  
정태호 · 박민규 · 서영교  
박상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u>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 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 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 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 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u></p>
<p>제53조(과태료) ①·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lt;신 설&gt;</p> <p>1. ~ 18. (생 략)</p> <p>④ (생 략)</p>	<p>제5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p> <p>1. <u>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 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 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아 니한 자</u></p> <p>2. ~ 19. (현행 제1호부터 제18 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